

상속한정승인청구

- 청구인(신청인) 1. ○ ○ ○ (000000-0000000) (전화)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
주소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2. ○ ○ ○ (000000-0000000) (전화)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
주소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3. ○ ○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
주소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피상속인(망) ○ ○ ○ (000000-0000000) (2010. 12. 10. 사망)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
최후주소 : 서울 ○○구 ○○동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들의 직계비속 바, 피상속인 ○○○은 ○○○○. ○. ○. ○○시 ○
○구 ○○동 ○○○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 ○. ○. 알
았으나 위 상속이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
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제적등본 | 2통 |
| 1. 기본증명서 | 1통 |
| 1. 가족관계증명서 | 3통 |
| 1. 주민등록초본 | 3통 |
| 1. 인감증명서 | 3통 |

- 1.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1통
- 1. 상속재산목록 1통

2000. 0. 0.

청구인 〇 〇 〇 (인)
 청구인 〇 〇 〇 (인)
 청구인 〇 〇 〇 (인)

〇 〇 가 정 법 원 귀중

접수방법

1.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 : 상속인이다. 신고하는 자가 무능력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수입인지 : 청구인(상속인) 1인당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4.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 × 회분을 납부한다.
5. 관할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단독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 (주) 1. 상속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했어도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2.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한정승인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선고 2005브85 결정).
 이 경우 상속재산 중 남아 있는 재산은 물론,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예 : 채무독촉장수령시기, 독촉장사본, 소장부본 등)와 함께 채무존재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소극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신청서 작성방법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적극재산을 ‘0’으로 기재하고, 소극재산을 ‘모름’이라고 기재한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심판청구에서 그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4. 특별한정승인 범위확장

상속과 관련하여 1998. 8. 27. 고려기간 도과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1998. 8. 27. 96헌가22)이 내려짐에 따라 2002. 1. 14.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동법 부칙 제3항에서 그 소급적용의 범위를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2002. 1. 14.)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칙 제3항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자를 포함하는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또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 1. 29. 2002헌다22 등)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특별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5. 12. 29.

민법(제7765조)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여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증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그 사실을 안 자 중에서 ①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안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②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안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민법 부칙 4항, 2005. 12. 29.부터 시행).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증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앞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진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정승인이 있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고는 원칙적으로 상속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상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 군 구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할 수 있다(민법 88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3,4). 한정승인자가 위와 같은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1038조).